

## 오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

제정 2010년 11월 15일 조례 제1117호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시의회의원(이하 “의원”이라 한다)의 의정활동을 지원·자문하기 위하여 오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(이하 “자문위원”이라 한다)을 구성하고,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능)**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회의 자문에 응한다.

1.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역할
2. 의정에 관한 의견제시 및 정책적 자문
3. 지역의제 개발을 위한 조사·연구 활동
4. 그 밖에 의회가 요구하는 의제에 대한 자문 등

**제3조(구성)** ① 자문위원은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자문위원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의정담당이 서기는 의정팀 직원으로 한다.

**제4조(위촉)**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시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이 위촉한다.

1. 행정·문화예술·환경·교통·교육·사회복지·법률 등에 관한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전문가
2. 전직의원 및 전직공무원으로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사람
3. 그 밖에 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
**제5조(임기)** 자문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**제6조(해촉)**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
1. 자문위원이 사임을 표명한 경우
2. 제2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
3. 자문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
4.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**제7조(회의 및 자문)** ①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는 수시로 회

## 오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 운영 조례

의를 소집할 수 있다.

② 의장 또는 의원이 의정활동상 자문을 필요로 할 경우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관련분야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,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.

③ 그 밖에 필요시는 간담회 등에 초청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.

**제8조(실비보상)** 회의·간담회 등에 참석한 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.

**제9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「오산시의회 회의 규칙」으로 정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